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1. 03



● 주민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1.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주관 및 관할 행정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신문공고 : 아시아투데이, 충청투데이

• 주민공람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천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군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4. 주요 공고·공람 내용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20. 10. 26 ~ 2020. 11. 23 (21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 장소	계획수립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관계기관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천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군 문백면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rocm)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5.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 천안시(동면행정복지센터) : 2020. 11. 03(화) 14:00 - 진천군(진천읍행정복지센터) : 2020. 11. 04(수) 14:00

• 참 석 자(명부기준)

- 천안시 : 30인 - 진천군 : 13인

6.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아시아투데이(2020.10.26.)

충청투데이(2020.10.26.)

25 아시아투데이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4호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항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경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동면~진천 (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항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0월 26일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ㅇ 위 지: 충청남도 전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웬닥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 : 연장 12.0km(B=20.0m, 4차로 확장), 기타 부대시설 등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0. 10. 26(월) ~ 2020. 11. 23(월)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얼 제외)
- 광립장소: 대전자방국토관리정 도로계획과, 찬안사정 건설도로과, 찬한군정 지약계활과, 찬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군 문백대행정복자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20. 11. (3(화) 14:00~: 천안시 동면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2020, 11, 04(수) 14:00 ~ : 진천군 진천읍사무소(2층 대회의실)
- *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중대본의 방역자집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재공고 등을 통해 통보 예정

4. 주민의견 제출

- o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제출장소:대전지방국토관단청 도로계하마, 찬안시청 건설도로과, 전환군청 자약계환과, 찬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군 문백명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전틱환경영향망가서(조안) 및 공고문은 대전자방국도관리형 홈페이지(요약문만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망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공합 및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같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랑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임용만, ☎042~670~3515)로 문의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공항 주년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19

대전자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4호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내용: 연장 12.0km/B=20.0m, 4차로 확장), 기타 부대시설 등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0, 10, 26(월) ~ 2020, 11, 23(월)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천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자센터, 진천군 문백면행 정복자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2020, 11, 03(화) 14:00 ~ : 천안시 동면행정복자센터(2층 회의실)
- 2020 11 04(수) 14:00 ~ : 진천군 진천읍사무소(2층 대회의실)
- *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중대본의 방역자침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 시 재공고 등을 통해 통보 예정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제출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찬안시청 건설도로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찬 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자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자센터, 진천군 문백면행정 복자센터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요약문관 게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길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임용만, ☎042-670-3515)로 문의바랍니다.

정보통신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정보통신망: 진천군 홈페이지



천안시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사진



진천군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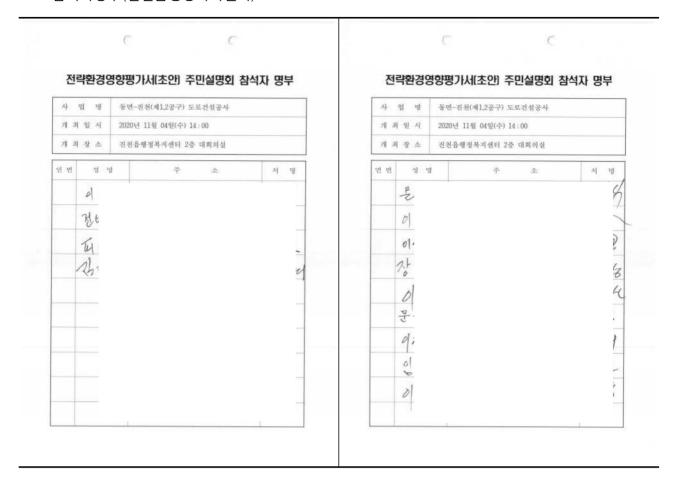


7.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개최사진

• 참석자명부(동면행정복지센터)



• 참석자명부(진천읍행정복지센터)



• 개최사진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 의견제출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천안시, 진천군

• 주민의견 제출자 : 없음

• 주민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가. 주민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금강 유역 환경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면~진천(제1,2공구)	 사업명: 동일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송연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노선의 시종점 위치변경은 없으나, 시 점주소 정정함) 규모: 동일 사업자/승인기관: 동일 	-
	1. 총괄 가. 본 계획은 충남 천안시 동면 구도리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구간의 신설 및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 계획으로서, 이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구간의 신설 및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 계획으로서, 이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연
	나.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제시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반영
	2. 계획의 적정성 가. 아래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각 대안별 구체적인 예측영향 등을 비교·평가 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반영
	○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	반영
	나. 환경보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다. 도로의 비교노선(안) 및 차로수의 적성성 검토를 위해 기존 도로의 현재 교통량, 향후 예상 교통량 등을 타당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금강 유역 환경청	3. 입지의 타당성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도로 신설계획은 지역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동식물상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도로사업을 계획할 경우	 도로 신설로 인해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을 제시하고 단절로 인한 분류군별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반영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계획에서 생태네트워크 단절이 예상되는	_ · · · · · ·	
	지역의 생물군별 영향을 파악, 동물이동 제약의 가중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보전계획을 수립·제시하여 최적의 노선 선정	대안2), 잣고개구간(대안1) 터널계획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시 단절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추후반영
	- 야생생물 등의 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유도펜스, 소형동물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생태 탈출로뿐만 아니라 생태통로 등의 이동성 확보방안 검토·반영 ※ (참고)「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 야생생물 등의 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해 유도펜스, 소형동물 탈출가능한 생태측구 및 생태통로 등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7,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7, 환경부)」	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치위치, 규모 등은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반영
	○ 대안별 훼손정도 확인을 생태·자연도 및 식생 보전등급의 등급별 편입 비율 및 면적(규모)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경우 경사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함께 제시	식생보전등급의 등급별 편입 비율 및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측면에서 노선별 입지 대안 비교,분석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의 세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주변 지형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별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축척별로 다양하게 제시		
	- 위성사진에 노선을 중첩하여 노선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터널구간의 경우 지형을 입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계획노선도에 대안별 신설구간과 기존도로 구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대안별로 신설 및 기존도로 준용 구간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기존도로 미활용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구간의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기존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금강 유역 환경청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대안별 사면의 위치, 형상, 연장,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변화 현황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절·성토량, 절·성토고, 절·성토비탈면고 등)	- 대안별 절성토 구분도와 대안별, 공구별 토공량 및 최대 깎기·쌓기 구간의 높이, 비탈면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와 도면으로 제시함	반영
	○ 대안별 산사태위험등급 편입구간 및 면적 (규모)을 제시하여야 함	산사태위험등급도 중 가장 위험구간인 1등급에 대한 대안별 편입면적을 제시함	반영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생훼손 면적, 규모, 종류, 위치를 대안별로 분석하여 이식 계획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생훼손을 대안별로 분석하여 훼손 수목량을 산정 하였으며, 이 중 자생종에 대한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다. 수환경의 보전○ 터널폐수 방류로 인한 인근 하천 수질등급 변동 등 영향을 예측하고, 목표수질과 연계한 방류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터널폐수 방류로 인한 인근 하천 수질 등급 변동 등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계획 노선 주변 하천수질 영향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계획노선 도로와 교량건설 등으로 인한 영향 파악을 위해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량과 주변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계획노선 도로와 교량건설 등으로 인한 영향 파악을 위해 토사유출 및 비점오 염원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반영
	○ 운영 시 도로의 비점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교량별 초기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종류설치위차제원 등 제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참고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종류, 설치위치,	
	라. 소음·진동 ○ 운영시 저감대책인 방음벽 설치시 계획을 제시한 바, 설치 시 예상 소음과 분석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소음포장 등 별도의 저감대책 수립·제시 필요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소음과 분석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예측소음을 제시함 -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기준을	추후반영
	마.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 및 기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일반현황 및 거감방안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위해 보호지역 포함 면적 및 여부, 생태자연도 포함지역 면적,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구간, 식생보전등급, 훼손수목량, 토공량, 지형변화,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정온시설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제시. 끝.	포함면적 및 여부, 생태자연도 포함지역 면적,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단절구간, 식생보전등급, 훼손수목량, 토공량, 지형	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청 당 남	□ 계획개요 ○ 계획명 :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면 구도리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 규 모 : 연장 12km(B=20.0m, 4차로) - 1공구 6.7km, 2공구 5.3km ○ 사업비 : 2,418억원 ○ 공용개시년도 : 2027년 ○ 계획수립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검토의견 ○ 본 건은 충남 천안시 동면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를 연결하는 국도21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 발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반영
	○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발을 지양 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대안별 노선계획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추후반영
	○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저감대책 외에추가저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환경관련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겠음	추후반영
	○ 본 검토의견 및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저감 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 행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본 검토내용 이행과 관 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검토의견 및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 저감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으며, 본 검토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도	○ 주변 기존 도로의 활용성,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접근성, 안전성,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대한 향후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안정성	반영
	○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별도관리지역, 국토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축, 자연공원, 보호수 등)은 우회하거나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획노선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면밀한 환경적 입지검토가 요구됨.	별도관리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보호수 등은 편입되지 않았으며, 산림축 훼손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안별 검토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적은 대안1안을	반영
	-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생태축(만뢰지맥 등)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의 훼손·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의 우회 또는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산림축을 통과하는 기 개설된 도로 확장 시 추가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태축(만뢰 지맥 등) 및 노선 인근 주요 임야구간 (봉화산 등)은 터널계획을 수립하여 훼손· 단절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바람길(주풍향)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지도 등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바람길 및 비오톱 지도 등을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은 어려운 바, 대안별 검토를 통해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음	반영
	○ 대안(노선 구배조정, 절·성토 계획 조정, 노 선부분 조정 및 우회 등) 모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고려하여 절·성토가 최소화 되는 대안 1을	반영
	○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 예정수목량을 총 훼손수목량의 1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착공 후 보전·이식 가치가 높은 수종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이식·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생종 위주로 이식 예정수목량을 총	
	○ 사업 시행시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최소화 및 사면붕괴 등 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환경과 이질적이지 않은 토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비옥토,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암반특성에 따른 비탈면 표준경사를 적용 하고 지형의 변화 최소화 및 사면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	○ 과도한 절·성토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에 따른 사토의 처리방안 등의 대책이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 으로 지형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주변 지형과 경관상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녹화 및 복원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고려하여 절·성토가 최소화 되는 대안 1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토공량은 부족토 발생으로 검토되었으나,	추후반영
	○ 또한, 사업 시행으로 흙깎기 및 쌓기에 따른 지형변화와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요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 및 노선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라 경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친 환경적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경관변화 예측시,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 및 노선검토 등을 실시 하고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노선확정 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예측을 실시하겠음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 등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적용 등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음	반영
	- 성토 및 교량 등 설치로 인한 일조피해 예상 지역은 공사 시행전 면적, 재배작물 등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일조방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으로 편입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구간에 대한 일영분석을 통해 주거지에 대한 일조권고치 만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 사업 시행에 따른 사면 발생 구간은 식생활착, 사면붕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계획하고, 조속한 생태복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반영
	○ 조명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농작물의 경작,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명기구는 및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계획노선 인근 조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및 경작지, 주거시설 주변은 컷오프형 조명갓 적용을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금강수계 병천A, 미호A, 미호B)으로 개발계획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시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천안시, 진천군)와 협의하고 관련 공문을 제시하였음	반영
	○ 운영시 도로 노면 등 비점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 배제 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 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종류, 설치위치, 제원 등 구제척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 터널 폐수의 대량 발생으로 인하여 하류 수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처리수로 인한 수용하천별 수질영향을 예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공사시 발생되는 터널폐수 방류로 인한 인근 하천 수질등급 변동 등 영향을 예측 하였으며, 계획노선 주변 하천수질 영향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반영
	○ 우천시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유류가 묻은 장비, 폐유 등은 야외 적치를 금지하는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하천 및 토양이 오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하천횡단 교량공사는 가급적 갈수기에 시행하며, 유류가 묻은 장비, 폐유 등은 야외 적치를 금지하는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하천 및 토양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임 	반영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 물질 등이 하류 수계 및 농경지에 직접 유입 되지 않도록 수계(하천, 저수지, 농수로 등) 및 수질 현황, 배수유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감대책(토사 유출 최소화, 우수배제 및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 토사유출 저감과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오염원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반영
	 송연2교, 덕성교는 하천을 관통하기에 교량설치작업 등으로 인한 탁수, 토사 등이 배수로를 통해 하류수계 및 인근 농경지로유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고, 지구 경계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배수구역별 충분한규모의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설치하고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유흡착포 등을 충분히 비치하며, 공사시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화된기준을 적용하는 등 수질오염방지대책을마련하여야 함. 집중호우 등에 대비, 배수구역별 지역적 특성을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가 설치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설치 지점, 규모 등을 제시하고,이들 시설은 조기에 설치되어야하며 침사지 	- 절성토공사 및 하천횡단 교량공사는 기급적 갈수기에 시행하며, 토공사 및 교량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 설치위치, 제원 및 유지관리계획 등 구제척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공사 시 토공사전 침사지를 설치하겠음 - 공사시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현장비치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방제계획을 수립하겠음 - 현장사무소 내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르며, 처리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3]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음	추후반영
	이들 시설은 소기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사시 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준설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도	○ 금회 계획노선 중 하천을 점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환경 보전을 위해 재검토하여 신설 및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하천별 상위계획인 소하천 및 하천기본계획 상의 홍수위를 고려하여 교량의 종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하천 통과구간의 교량형식, 교대 및 교각 설치계획 등 세부계획이 수립 되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영향을 예측할 계획이며 하천점용이 불가피 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 사업노선 인근에 광산(폐광산, 석면광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중 금속, 석면 유출 등 환경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노선 인근 광산분포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계획노선의 폐광산의 편입은 없으나 노선확정 시 재검토하고 광산 편입 시, 공사로 인한 중금속, 석면유출 등의 영향검토를 실시 하겠음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착공 전에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폐공 또는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는 증빙 자료와 함께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는 등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지하수 관정 현황을 조사 하여 제시하였으며, 계획노선의 지장물로 조사되거나 토질조사시 발생되는 시추 조사공은 「지하수법」에 따라 착공 전 폐공 또는 폐쇄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지하수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임	
	○ 터널 공사시 고압의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구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실시설계 시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구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연약 지반 분포 시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등으로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와 인근 지하수 시설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구간별 지질특성 및 구조물 현황을 고려한 면밀한 지하수 영향예측과 이에 따른 저감방안과 모니터링 계획이 필요함.	현황을 파악하고, 터널공사에 따른 실제 공사 및 운영시 영향사례를 조사하여 지하수위 강하 등 영향이 예상될 경우,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 중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추후반영
	- 터널공사에 따른 실제 공사 및 운영시 영향 사례를 조사하여 지하수 유출유입 및 지하수위 강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예측하여야 함.	지속적인 확인과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피해가 확인되면 대체 관정 등의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평가구간의 지층변화와 지하수 흐름 특성을 고려할 때, 시공 중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검증이 필요, 사업 구간과 주변 지역에 장기 지하수위 관측공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착공 전부터 준공 후까지 지하수 수위 변동에 따른 지반침하에 능동적 대처해야 함.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 도	○ 사업 시행에 따라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하여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기존도로와 계획 노선의 단절구간에 대한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생태이동통로, 유도휀스 및 생태측구 등의 시설을 적정 설치·운영하고, 추후 도로 이용시 동 노선내 로드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기존 및 신설단절 예상구간을 제시하였으며, 저감대책으로 실시설계 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생물 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생태이동통로, 유도휀스 및 생태측구의	
	○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삵, 수달, 원앙, 황조롱이, 붉은박쥐 서식지)이 발견됨에 따라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 및 운영시 법정 보호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 번식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서식지 등을 발견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조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공사시 및 운영시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수립하겠으며, 출현종 및 서식지 등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추후반영
	 ○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10.6.)」을 준수하여 녹지축단절 및 로드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생태교량 등을 설치하고, 생태통로 진입부 등은주변 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식이식물 위주로 설치하여야함. ○ 도로 개설에 따른 동물 이동의 단절 및 로드킬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동물이동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함.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구간 내출현및출현가능성이 있는 동물상을 반영하여도로공사에 따른 동물의 이동단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적정 규모의 저감시설물 설치를 검토 - 생물이동 단절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계획 제시 	인한 신설단절 예상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녹지축 단절 최소화를 위해 주요녹지축은 터널 계획을 수립하여 단절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 도로개설에 따른 동물이동 보전대책으로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로드킬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우회, 생태통로 및 유도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생태적 연결성 단절 최소화를 위해 계획한 터널구간의 경우, 상부 유도를 위한 울타리 계획을 검토하고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를 파악하여, 이동통로로 예상되는 곳에 탈출로 및 유도울타리 등을 검토하겠음	반영
	- 논과 같이 습한 환경을 이루고 있거나, 소 형동물의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측구, 배수로, 농수로 등에 탈출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반영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투명방음벽설치 최소화 및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투명방음벽 설치 필요 시「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여 격자무늬 스티커나 UV패턴유리 등을 활용하거나 불투명방음벽을 적용 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 환삼덩굴, 가시박, 돼지풀, 단 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 저영향개발기법(LID)은 도로, 주택단지, 건축물, 가로수 등 곳곳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고안됐으며,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공기질 개선, 지하수 함양 증가, 경관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므로 적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실시설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공원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아스팔트 대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 적용	- 보행로 계획 시 투수성 포장재 적용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 터널 공사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기계획(저감대책 포함)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터널 공사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가스 허용 농도는 지정 기준치 이하를 준수하고, 발파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갱구부 방음문 등을 설치하겠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사시 환기계획은 적정방식을 검토중이므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환경영향평가시)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 공사규모를 고려한 환기설비 용량의 적절성 검토	-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 (환경영향평가시)에서 터널 공사시 소요 환기량 및 환기방식 및 용량 검토, 환기 설비 등을 제시하겠음	
	- 이동식 및 고정식 집진기의 운영계획 수립	-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터널 내 공사시 소요환기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시 이동식 및 고정식 집진기 계획을 검토하겠음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 지속적인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입·출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현 단계는 노선선정 단계로 운영시 환기 계획은 적정방식을 검토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 (환경영향평가시)에서 환기설비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 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향후 실시설계 단계(환경영향평가시)에서 계획노선 길이 및 규모, 차량통행량 등 세부사항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 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겠음 	
	- 운영시 환기구(배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실시설계 단계(환경영향평가시)에서 운영시 환기방식이 선정으로 배기 환기구 설치필요 시 설치지점 및 제원 등에 따른 환기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을 검토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겠음	추후반영
	- 환풍기 설치로 인하여 주변 피해가 없는지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환풍기 설치유무 및 설치지점, 규격 등 구체적인 환기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음	
	- 급기의 경우, 가능한 깨끗한 공기가 유입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배기 역시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므로 위치 선정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 중 인근 시설의 분포를 확인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획하여야 함.	- 환기방식 및 환기구 설치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며 환기구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운영시 환기구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	- 터널계획시 환기방식의 결정에 따라 환기구(배기구)가 설치될 경우,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를 검토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터널 내 고압살수차, 물탱크 트레일러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터널 내 고압살수 등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강구하겠음	추후반영
	○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적 특성이 있기에 여름철 측정값을 기준으로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한 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미세먼지 현황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 2차 현황조사(2020년 11월)를 실시한 바, 운영시 예측 현황농도 적용시 1차(하계) 및 2차(추계) 현황조사를 반영 하였으며 사업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총발생량은 토공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안2안이 높게 산정 된 바, 공사시 영향은 대안1안이 유리 할 것으로 평가됨	반영
	-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겠음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	○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인접 다수지역에서 공사장비 등 투입장비에 의한 예상소음·진동도가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합리적인 최적 노선선정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공사차량 저속운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함.	대안 1안이 적고 공사시 소음예측결과도 대안1안이 유리하며, 운영시 대안1안이 기준초과 지점이 9개소로 대안2안(5개소)에 비해 많지만 초과지점의 소음예측결과는 대안1안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반면 대안2안은 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최적	
	- 또한, 발파시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발파구간이 확정되는 계획노선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파소음· 진동 기준 및 영향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함	반영
	- 민원발생 지역 및 모니터링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 추가하고, 기준을 준수토록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설치 시에는 조망권, 통풍 및 마을 출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주변 경관과 외 부조망을 고려한 방음판의 재질 및 색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수목식재 등 녹화공법 도입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인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질감 및 부조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조망권, 통풍 및 마을 출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주변 경관과 외부조망을 고려한 방음판의 재질 및 색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 공사시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약량의 최소화, 소규모 발파, 발파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파시(시험발파 포함)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약량의 최소화, 소규모 발파, 발파	
	○ 개발사업에 있어 녹지공간은 소음진동 차단, 악취·미세먼지 저감 등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음 및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주거지역, 터널 입·출구부, 성토사면 등	반영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소음 및 대기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다수지점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학적인 최신 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온시설에 대해 대안별로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 특히,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함. ※ (참고)『환경분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부, 2008)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반영
	○ 계획노선의 지반 조건에 따라 침하, 함몰, 시설물 붕괴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획노선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지점에 대해 지반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 및 공사 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지반 및 지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 및 공사 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생활, 폐유 등)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관련법 등에 따라 적정처리계획 및 재 활용 대책을 수립하겠음	
	○ 동 사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 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을 준수 하여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음	
	○ 사업노선 내 철거대상 지장물이 존재하기에 철거대상 지장물 지역의 토양오염 여부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노선 내 토양오염 현황을 파 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정확한 지장물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안 별로 토양오염우려시설을 제시하였으며,	
	- 토양오염이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 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 발파시 화약 잔류성분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면부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야 하고,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및 축사 등이 위치하는 구간은 차폐·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주거지역, 터널 입·출구부, 성토사면 등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에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한 수목 위주로 식재하여 완충역할을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 시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수목 식재 시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 선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추후반영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 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획노선 내 지장물 철거시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서는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사업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 승인 후 20일 이내 사업관련 내용을 부과기관인 충남도청 및 충청북도청에 각각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충청 남도 [하천과]	하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후반영
	○ 지방하천과 관련된 사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소하천 관련 사항은 천안시 해당 부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농업 정책과]	 가. 협의의견 ○ 상기『동면~진천(1,2공구)도로건설공사』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시 농지법령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의와는 관계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
	나. 제시조건 1)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	추후반영
	2)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 34조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농지전용 업무 처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서식에 의거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등)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서식에 의거 받겠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등)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겠음	
	3)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잔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출입로에 영향이 없도록 부체도로, 통로박스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4)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반영
	다. 이울러, 천안시 농지관리부서는 상기 협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
충청 남도 [산림 자원과]	가.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 1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나.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 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으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산지관리법」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산림 자원과]	다.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천안시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가 생육 하는 산지가 가급적 편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편입이 불가피할 경우 천안시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 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라.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 협의 절차 시 첨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지전용 협의 절차 시 첨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반영
	마.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 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 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 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 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바.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편입 토지 내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토 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확인 될 경우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사.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면의 경우에는 자연 표토 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지 복원용 으로 활용 조치	비탈면은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경사기준 및 녹 화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계획노선 내 깎기 작업에 따른 비옥토는 발생이 예상 되는 바, 편입용지 확정 후 비옥토 발생량을 산정하고 계획노선 인근 가적치장을 마련 하고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아.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자.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겠음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도로 철도	1. 주거밀집지역(동산리, 덕성리 등) 통과구간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 하여야 함.	주거밀집지역(동산리, 덕성리 등) 통과구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외에도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	반영
항공과	2.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 농경지(과수원) 편입 시 편측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설치 등으로 우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후반영
	- 부득이 지장물(가옥) 편입 시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 전체 면적을 편입하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지장물 편입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음	추후반영
	3.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농수로,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등의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	
	4. 고성토 구간은 재산권, 조망권, 일조권 침해,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대안1안 최대 쌓기비탈면고 10.15m, 대안2안 최대 쌓기비탈면고 18.99m로 대안1안은 15m이상의 고성토구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조권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5.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발생 시 추가 저감 대책(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준초과 또는	추후반영
	-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지구 및 주거 지역 통과 구간 방음벽 설치 등 ※ 특히, 덕성 터널 진출입부의 소음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초과할 경우 방음벽 이외에 추가저감대책을	
	6.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파작업 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추후반영
	-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벽 설치, 음향 시설, 트랜치, 저소음공법 적용 등	- 환경목표기준 초과시 추가저감대책 수립 (공회전 및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가설 및 영구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등)	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 남 도 도 절	7.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식 공간, 이동경로 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평가시 발견하지 못한 법정보호종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 하여 발생 가능요인을 최소화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	추후반영
항공괘	-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임야 단절구간 생태통로 설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 울타리·측구탈출로 등 설치	○ 계획노선 인근 주요 산림녹지축은 터널로 계획하여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단절 현황을 최소화 하였으며, 그 외 영향이 단절예상 구간에 대해 생태통로 및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측구 등을 설치·검토하겠음	
	8.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녹지를 단절하지 않고, 구역 내·외부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며,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여야 함.	않도록 주요 산림녹지축에 대해서는 터널로	
	9. 관로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로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송 유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10. 법정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로암거 설치, 육교 및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고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적용하여야 함.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통로암거 설치, 육교 및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겠으며 계획노선은 설계기준 및 교통안전진단 등을 통해 충분한 폭원 및 높이를 설계에 반영하겠음 	
	11.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특용작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 하여야 함.		
	12. 하천횡단 교량 설치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되, 접속도로 종단 상향에 따른 민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13. 구조물(교량)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 교량 반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구조물(교량)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 교량계획을 수립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차로 개선, 보행로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특히, 4차로 전제 2차로 시공되어 현재 공용 중인 '용두~동면' 3.9km구간은 병목 현상이 우려되므로, 국도 간선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차로 확장 계획을 본 사업계획에 포함 또는 신규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계획으로 이를 통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차로 개선, 보행로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추후반영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도로	15. 도계(시·군)경계지역 표지판 설치 필요,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요망	○ 도계(시·군)경계지역 표지판 설치할 예정 추후반영 이며,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하겠음
철도 항공과]	16.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토	○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도내 추후반영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토하겠음
충청 남도 [미세 먼지 대책과]	1. 본 계획은 녹지공간 확보, 대기오염 정화수종 (미세먼지 흡수량이 높은 수종)식재 등으로 미세먼지 흡착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
	2. 대기질 예측결과(P493)와 같이 PM2.5, PM10 등의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미세먼지 저감계획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관급공사 노후장비 운영 제한(일정규모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기간 변경·조정, 살수차 증대운영(주변도로 포함), 방진덮개복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추후반영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방진덮개 설치,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살수량 증대, 공사시간 단축조정 등의 추가 저감방안을 이행하겠음
	3. 동 평가서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 4.)에 따라 충청남도 14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 4.)에 따라 반영 계획노선이 위치한 충청남도 천안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을 포함한 중부권 지역이 신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 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추후반영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충청 남도 [환경 안전 관리과]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 공사(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또는 포장 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등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추후반영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을 준수 하여 순환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음
	나. 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사업시행 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추후반영 영향이 없도록 가설 및 영구 방음벽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환경 안전	라.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처리 및 재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과	추후반영
관리과]	마.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반영
충청 남도 [물관리 정책과]	가. 사업시행 시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하천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기 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여야 하며, 부유사 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및 장비로 인한 유류유출 등 토양·수질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가급적 갈수기에 시행하며, 토공사 및 교량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추후반영
	나. 계획노선 내 교량 설치 계획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하천횡단 교량공사는 가급적 갈수기에 시행하며, 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 오일 휀스, 유흡착포 현장 비치 등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추후반영
	다. 터널 공사 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하천 및 지하수 등에 영향이 우려되는바, 방류폐수로 인한 영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인근 하천 수질등급 변동 등 영향을 예측	추후반영
	라.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천안시 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아 본안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반영
	마. 도로 건설로 인한 지하수 시설 소멸 시 천안시 지하수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계획노선의 지장물로 조사되는 지하수 관정은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련 법에 따라 착공 전 폐공조치 할 계획임	추후반영
	바. 터널 건설시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하며, 원활한 강수 침투를 고려하여 침투수로 등의 공사가 필요함. 끝.		추후반영
충청 남도 [문화 유산과]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업 범위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하고 문화재청과 보존조치에 대하여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청과 보존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추후반영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협의)에 따라 사업 범위 내 매장문화재 유 존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사업시행 전 관계 기관과 보호방안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협의)에 따라 노선 확정 후 사업	추후반영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4,000㎡ 이상은 문화재청 협의 사항	이상은 문화재청 협의 사항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4,000㎡ 이하는 충남도청 협의 사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4,000㎡ 이하는 충남도청 협의 사항	-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남도 [문화 유산과]	다.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및 유물확인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5조(계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신고하기 바람.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및 유물확인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5조(계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신고하겠음	
충청 북도	□ 사업개요 ○ 사업명: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사업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연 장: 12km(B=20.0m, 4차로) ○ 설계속도: 70km/h ○ 개시년도: 2027년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요 사업내용 - 교량 8개소(352m), 터널 2개소(2,470m), 교차로 9개소 등	_	-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은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있도록 하겠음 	추후반영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기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구역의 결정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구역의 결정 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겠음	
	○ 계획노선 주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수달, 삵, 황조롱이, 원앙 등)이 서식 및 서식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출현·활동시기 등을 고려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2회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였으며, 계획 노선 주변 분포하는 다수 법정보호종의 출현·활동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계절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그 결과를 제시할 계획임	추후반영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및 「생물이동(생태통로)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이동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야생동물 단절 예상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및「생물 이동(생태통로)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경부)」를 참고하여 야생동물 이동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검토 하고 추후 실시설계단계에 세부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북도	○ 본 사업구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미호A, B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진천군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시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천안시, 진천군)와 협의하고 관련공문을 제시하였음 	
	○ 사업구간 내 지하수 관정 철거, 지하수시설물 설치 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지하수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수와 협의하여 함.	 계획노선 주변 지하수 관정 현황을 조사 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장물로 조사되는 지하수 관정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련법에 따라 착공 전 폐공조치 할 계획임 	
	○ 사업추진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 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 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겠음	
	○ 공사·발파 시 시험발파를 통해 현장여건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이격 거리별 사용 가능 장약량을 산출 발파로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온시설(주거지, 축사 등)에 대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발파 시 시험발파를 통해 현장여건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이격 거리별 사용가능 장약량을 산출 발파로 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온시설 (주거지, 축사 등)에 대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본 사업지역 내의 식생이 우수한 수목은 재이식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오탁 방지막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훼손수목 중 자생종 10%에 대해 이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부유토사 발생영향을 저감 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할 계획임 	
	○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자연환경 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인(인·허가 등) 권자는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부과자료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우리도 환경 정책과)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자연 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 부과 자료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 (충남도시사, 충북도지사)에게 통보하겠음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의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의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충청 북도	○ 본 검토의견은 우리 도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사업 시행과 관련 하여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협의를 통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끝.	사항 외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추후반영
천안시	○ 계획노선에 2개 지방하천(녹동천, 용두천)과 소하천(동산천)이 저촉되는 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충청남도(하천과)와 소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건설도로과)와 도로구역 결정 전 별도 협의하여야 함		
	○ 덕성2리 마을 인접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및 개통 후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함.	○ 현 단계에서 덕성2리 마을은 운영시 소음영향예측결과 환경목표기준을 만족 하나,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교통량 재검토를 통해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음벽 설치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목표기준을 만족 시키는 등의 피해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겠음	
	○ 아울러 공사 중 우려되는 덕성2리 마을상 수도 오염에 대한 대체방안 검토 요청. 끝.	○ 현재 덕성2리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설계 중이며, 마을상수도 설계 시 계획노선과 연계 하여 상수도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향후 실시설계 시 천안시청과 협의할 계획임	
진천군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사업(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4km이상의 신설되는 도로의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금강유역 환경청장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시 수질오염총량 누적관리대장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수질오염총량 할당 가능 여부를 환경과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금강수계 제4단계(2021년 ~ 2030년) 준공예정 사업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오염총량기본방침」제28조제2항에 따른 기 확보된 삭감량 부족으로 수질오염 총량 할당은 금강수계 4단계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후 검토 가능하며, 협의 시 우리 군 수질오염 총량 개발할당 가능량 부족으로 총량 할당이 불가할 수 있음.)	부하량을 할당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시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천안시, 진천군)와	ල ජ

의견 제출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진천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여부를 금강유역 환경청에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 (충청북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여부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권자(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에 통보하겠음	
	○ 「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저감시설설치 신고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저감시설설치 신고 대상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할 계획임	
	○ 도로건설공사 중「물환경보전법」제2호제 10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터널폐수가발생 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터널공사 시 952~1,054㎡/일의 터널 폐수발생이 예상되며 터널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 전 관련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할 계획임	추후반영
	○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 등을 버리는행위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공사 시 공공수역에 폐기물 및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지 않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공사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공사 시행 전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 먼지발생신고와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9]에 따라 굴삭기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공사 시행 전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신고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9]에 따라 굴삭기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겠음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양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착공일 이전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양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착공일 이 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겠음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도로건설 공사) 운영시 폐기물을 평균 100kg/일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도로건설공사) 운영시 폐기물을 평균 100kg/일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겠음	추후반영

의견 제 출 자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도로건설 공사) 운영 시 지정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을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건설공사 중 지정폐기물(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을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을	추후반영
	○ 사업예정지 인근에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대한 철저한 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계획노선 공사 및 운영 중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방진방, 가설방음판넬 및 영구방음벽 등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음	추후반영

9.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사본

생태통로 등의 이동성 확보방안 검토 반영

경우 경사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함께 제시

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7, 환경부)」

※ (참고)「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생물이동(생태통로)

O 대안별 훼손정도 확인을 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의 등급별

편입 비율 및 면적(규모)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금강유역환경청(1/5) 금강유역화경청(2/5) 동면-진전(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금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수신 수신자 참조 사업개요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토의견 알림[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사 업 명 : 동면 ~ 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1. 대전지방국로관리청 도로계획과-9219(2020.10.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사임번호 : GG20200543 ○ 위 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변 구도리 ~ 충청북도 친천군 친천읍 원덕리 2. 「환경영항평가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면-진천 (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만)에 대한 검토의견을 불입과 모 : 총 연장 12km(L = 1공구 6.7/2공구 5.3km, B = 20m) ○ 사업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 괄 불임 전략환경영향병가서(초안) 검토의견 1부. 끝. 가, 본 계획은 충남 천안시 동면 구도리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구간의 신설 및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 계획으로서, 이 검토 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평가서'라 한다)에 제시한 저감 방아용 포한하여 저란화경영향과가 보아온 작성하여야 한 나.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제시 및 반영 여부를 요약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 계획의 적정성 극간유역**회견체제** 가, 아래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 각 대안별 구체적인 예측 영향 등을 비교 + 평가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半年計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NAN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AND BERRYLANDS (2020, 11, 23.) 제시하여야 한 # 34149 GRIDGE SHIP GRID 417 원화번호 042-865-0752 목소번호 042-866-0759 금강유역환경청(4/5) 금강유역환경청(3/5)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성공사 나, 환경보전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 지형·지질 측면에서 노선별 입지 대안 비교, 분석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의 세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하여야 하 - 주변 지형행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별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다. 도로의 비교노선(만) 및 차로수의 적성성 감토를 위해 기존 도로의 및 종단면도, 황단면도를 충처별로 다양하게 제시 현재 교통량, 향후 예상 교통량 등을 타당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위성사진에 노선을 중첩하여 노선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터널구간의 경우 지형을 입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입지의 타당성 - 계획노선도에 대안별 신설구간과 기존도로 구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가. 생물다양성 서실지 보저 대안별로 신설 및 기존도로 준용 구간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기존도로 미활용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도로 신설계획은 지역 생태네트워크의 단절, 동·식물상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증될 수 있으므로 도로사업을 계획할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대안별 경우 생태네트워크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사면의 위치, 형상, 연장,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형변화 현황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전 성토랑, 전 성토고, 전 성토비달면고 등) - 본 계획에서 생태네트워크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의 생물군별 영향을 파악, 동물이동 제약의 가중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보전 ○ 대안별 산사태위험등급 편입구간 및 면적(규모)을 제시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제시하여 최적의 노선 선정 ○ 사업 시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생훼손 면전, 규모, 종류, 위치를 - 야생생물 등의 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고 로드린 방지를 위해 유도 대안별로 분석하여 이식 계획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펜스, 소형동물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생태 탈출로 뿐만아니라

다 수화적이 보저

○ 터널페수 방류로 인한 인근 하천 수질등급 변동 등 영향을 예측하고,

○ 계획노선 도로와 교략건설 등으로 인하 영향 파악을 위해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량과 주변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을

목표수질과 연계한 방류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금강유역환경청(5/5)

충남도청(1/14)



- 운영 시 도로의 비정오연물적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교량별 초기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종류·설치위치·제원 등* 제시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문명 매뉴얼(환경부, 2014)」 참고

라 소음 작동

- 운영시 저감대책인 방음벽 설치시 계획을 제시한 바, 설치 시 예상 소음과 분석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소음포장 등 별도의 저간대책 수립 제시 필요
- 사,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 및 기타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일반현황 및 제감방안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
-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위해 보호지역 포함면적 및 여부, 생태자연도 포함지역 면적,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구간, 식생보전등급, 훼손 수목량, 토공량, 지형변화,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정온시설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끝,



양국화 해소, 더불어 잘 사는 더 형벽한 충난





수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제목 동면~진천(제1,2공구) 도르건설공사 전략환경영항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9219(2020.10.22.)호와 관련입니다.
-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항병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의]과 강이 회사하니다

불임 검토의견 1부, 끝



200

시형 기후환경정체과-12966 (2020, 12.3.)

접수 도로계회과-10715 (2020, 12, 3,) 구 32255 중앙난도 홍성균 홍복음 송년대로 21, 송남도청 기후환경정책 / http://www.chungnam.go.kr

충남도청(2/14)

충남도청(3/14)

-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계획 개용

- 계획명 :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O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면 구도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 규 모 : 연장 12km(B*20.0m, 4차로) 1공구 6.7km, 2공구 5.3km
- 사업비 : 2.418억위
- O 공용개시년도: 2027년
- 계획수립자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검토의견

- 본 건은 충남 천안시 동면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를 연결하는 국도21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량 및 환장사업으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O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혐의를 거쳐 화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 본 검토의견 및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해하여 사업 시해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 소화하여야 하며, 본 검토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 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O 주변 기존 도로의 활용성,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접근성, 안전성,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훼손이 최 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별도관리지역,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립축, 자연공원, 보호수 등)은 우회하거나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획노선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면밀한 환경적 입지검토가 요구됨.
-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생태축(만뢰지백 등)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의 훼손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의 우회 또는 기 개설된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 O 바람길(주풍향)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지도 등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O 대안(노선 구매조정, 절성토 계획 조정, 노선부분 조정 및 우회 등) 모두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훼손 수목에 대한 이식 예정수목량을 총 훼손수목량의 1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착공 후 보전이식 가치가 높은 수종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이식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 O 사업 시행시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최소화 및 사면 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환경과 이질적이지 않은 토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비옥토,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O 과도한 절성토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에 따른 사토의 처리방안 등의 대책이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으로 지형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주변 지형과 경관상 조화가 될 수 있 도록 구체적 녹화 및 복원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O 또한, 사업 시행으로 흙깎기 및 쌓기에 따른 지형변화와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요 조망점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충남도청(4/14)

충남도청(5/14)

- 아업 추진에 따라 정관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친환경적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교량 등 각종 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시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 최용 등을 반영한 경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토 및 교량 등 설치로 인한 일조과해 예상 지역은 공사 시행전 면적,
 재배작물 등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일조방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갖구하여야 한.
- 사업 시행에 따른 사면 발생 구간은 식생 활착, 사면봉과 예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계획하고, 조속한 생태복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조명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농작물의 경작, 인근 주 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수절오염총량관리지역(금강수계 병천A, 미호A, 미호B)으로 개발 계획시 해당 지자체와 혐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
- ② 운영시 도로 노면 등 비점오염문질이 우수와 함께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 배제계획 및 비점오염져감시설 설치계획수립 등 수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더널 쾌수의 대량 발생으로 인하여 하류 수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처리수로 인한 수용하천별 수질영향을 예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우천시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유류가 묻은 장비, 폐유 등은 야외 적치를 금지하는 등 오염통질 유출로 인한 하천 및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병히 주의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류 수계 및 농경지에 적접 유입되지 않도록 수계(하천, 저수지, 농수로 등) 및 수질 현황, 배수유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갑대책(토사 유출 최소화, 우수매제 및 비점오염원 저갑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송연2교, 덕성교는 하천을 관통하기에 교량 설치작업 등으로 인한 탁수, 토사 등이 배수로를 통해 하류수계 및 인근 농경지로 유 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고, 지구 경제지역에 가배수로 설치, 배수구역별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유흡화포 등을 충분히 비치하며, 공사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수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집중호우 등에 대비, 배수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지점, 규모 등을 제시하고, 이들 시설은 조기에 설치되어야 하며 침사지 기능을 함시 유지함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준설 등 유자보수를 설시하여야 함.
- 금회 계획노선 중 하천을 점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환경 보 전을 위해 재검토하여 신설 및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시행이 볼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노선 인근에 광산(폐광산, 석민광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중금속, 석민 유출 등 환경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착공 전에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지하수 관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폐공 또는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는 증빙 자료와 함께 혐의내용 관리대장에 기 록보존하는 등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여야 함.
- 더널공사시 고압의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점하 위험구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등으로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와 인근 지하수 시설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구간별 지 절특성 및 구조물 현황을 고려한 면밀한 지하수 영향예측과 이에 따른 저감방안과 모니터링 계획이 필요함.

충남도청(6/14)

충남도청(7/14)

- 터널공사에 따른 설제 공사 및 운영시 영향사례를 조사하여 지하수 유출유입 및 지하수위 강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예측하여야 함.
- 평가구간의 지충변화와 지하수 효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공 중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검증이 필요, 사업 구간 과 주변 지역에 장기 지하수위 편측공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착공 전부터 준공 후까지 지하수 수위 변동에 따른 지반침하에 능동적 대 처해야 함.
- 아업 시행에 따라 녹지축 및 동물이동로 단절로 인하여 각종 야 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기존도로와 계획노선의 단결구간에 대한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생태 이동통로, 유도휀스 및 생대축구 등의 시설을 적징 설차운영하고, 추후 도로 이용시 동 노선내 로드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수당, 원양, 황조롱이, 붉은박쥐 서식지)이 발전됨에 따라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 번식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서식지 등을 발견할 경우 해당 중에 빚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수로박스 및 형태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올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 (환경부, 2010.6.)」을 준수하여 녹지축 단절 및 로드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생태교량 등을 설치하고, 생태통로 전입부 등은 주변 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식을 위주로 설치하여야 함.
- 도로 개설에 따른 동물 이동의 단철 및 로드킬 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동물이동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도로 구간내 출현 및 출현 가능성이 있는 동문상을 반영하여 도로공사에 따른 동물의 이동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적정 규모의 저감 시설물 설치를 검토

- 생물이동 단절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 제시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연결성 단절 및 로드컬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 우회, 생태동로 및 유도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수립하여 야 함.
- 논과 같이 습한 환경을 이루고 있거나, 소형동문의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축구, 배수로, 농수로 등에 탈출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및 '야생조류 투명장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환삼덩굴,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생이, 가시 상추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저영향개발기법(LID)은 도로, 주택단지, 건축물, 가로수 등 곳곳에서 기능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고안됐으며, 수질개선, 열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공기질 개선, 지하수 항양 증가, 경관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하므로 적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공원 등은 불투수성 콘크리트아스팔트 대신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 적용
- 터널 공사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기계획 (저간대책 포함)을 수립·제시하여야 한.
- 공사규모를 고려한 환기설비 용량의 적절성 검토
- 이동식 및 고정식 집진기의 운영계획 수립
- 지속적인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압출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운 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 대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시 환기구(배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몽질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충남도청(8/14)

충남도청(9/14)

- 환풍기 설치로 인하여 주변 피해가 없는지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급기의 경우, 가능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하며, 배기 역시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므로 위치 선정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 중 인근 시설의 분포를 확인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획하여야 함.
- 운영시 환기구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간밖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터널 내 고압살수차, 물탱크 트레일러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항
- 이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적 특성이 있기에 여름철 측정값을 기준으로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한 결과는 제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절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저지역 등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 상·하차시 살수 및 세륜시설 관리강화, 방진막 설치 보강, 차량 및 적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인접 다수지역에서 공사장비 등 투입 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진동도가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 으로 예측됨에 따라 합리적인 최적 노선 선정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 저감대책·공사차·망 저속운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작업시간 조 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
- 또한, 발파시 소유·진동 영향예측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
- 민원발생 지역 및 모니터링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 추가하고, 기준을 준수토록 추가적인 저갑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가설방음관텔 및 방음벽 설치 시에는 조망권, 통풍 및 마을 출 입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고, 주변 경관과

- 외부조망을 고려한 방음판의 재절 및 색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수목식제 등 녹화공법 도입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이정간 및 부조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과작업 등으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받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장약량의 최소화, 소규모 발과, 발과 사전에고제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과시 (시험받과 포함)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진동 저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 개발사업에 있어 녹지공간은 소음전동 차단, 약취미세먼지 저감 등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음 및 대기절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다수지점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므로 과학적인 최신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변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함.
 - ※ (참고) 『환경분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환경부, 2008)
- 계획노선의 지반 조건에 따라 침하, 함문, 시설문 붕괴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노선 내 주요 시설문,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 및 공사 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아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생활. 폐유 등)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처리 및 제활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충남도청(10/14)

충남도청(11/14)

- 동사업이 「건설폐기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량」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환 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따라 순화골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 사업노선 내 철거대상 지장문이 존재하기에 철거대상 지장문 지역의 토양오염 여부 및 지장문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노선 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이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심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 발파시 화약 잔류성분으로 인한 토양오엽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부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하여야 하고,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및 축사 등이 위치하는 구간은 차폐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추가 저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 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수목 식재 시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 선택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재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서는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용 준수하여야 함.

【하천과】

- 하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하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 혐의하시기 바라며, 소하천 관련 사항은 취약시 해당 부사와 별도 혐의하시기 바람.

【농업정책과】

- 가. 혐의의견
- 상기 (동면~진천(1,2공구)도로건설공사, 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지진용협의사 동지합렴에 따른 실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와는 관 계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제시조건
 -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림농지의 편임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 2)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농지 진용 업무처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서성에 의가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용배주를 등)의 기능유자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3)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출임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편입농자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 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 아물러, 천안시 농지관리부서는 상기 협의의견이 반염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람.

【산림자원과】

- 가,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신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신지전용하기가준 및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 나, 런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 타당설 조사 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침부
- 다.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가 생태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 할 경우 천안시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령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 라. 실시설계 시 「신자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목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신지전된 법 의 정차 시 청부하되 동변 시했구최 제42조에 따라 작산기주 및 자격기주을 주수

충남도청(12/14)

충남도청(13/14)

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이 적정 점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리 느서방향 다마의 전취가가 쉐다 도로의 표준되던 다며 유용논이의 9배 미사의 경 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 도록 계획에 반영
- 바,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관계 법령에 부 함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무 큐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토하여 소나무재신충병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사. 철·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뮤지하되 암반 비탈면의 경우에는 자연
- 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염하고, 산림 내 표토의 경우 식물 생물에 유익한 투양지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과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눅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
- 아.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복을 조경수, 원복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들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명
- 자.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

【도로철도항공과】

- 1. 주거밀집지역(동산리, 덕성리 등) 통과구간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 하여야 한
- 2. 노선계획 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농경지(과수원) 맨입 시 팬축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영농에 지장이 어도로 투급받스 성치 등으로 유해하지 안도로 하여야 한
- 부목이 지장물(가옥) 편입 시 주민의견을 경취하여 전체 면접을 편입하는 방안 강구하여야 함.
- 3. 대규모 절-성토 공사에 따라 수질모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접모염 저감시설 설치 및 토사유실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 농수로,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4. 고성토 구간은 재산권, 조망권, 일조권 침해,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
- 5. 공사 및 운영 시 정본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발생 시 추가 저감 대책(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간구-시험하여야 함.
-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지구 및 주거지역 통과 구간 방음벽 설치 등 특히, 덕성 터널 진출입부의 소음 등에 대한 대해 마련 필요
- B. 특히 귀설기계 유했 핫타작언, 발파작언 시 또는 기타 소음·자동으로 인하 주변 지역에

- 민원(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원(환경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
 속도제한, 격업시간 제한, 방음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음광법 격용 등
 7.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분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분가와 협의하여 서식공간.
 이동경로 등 보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합.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분석의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입야 단절구간 경 태롱로 설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울타라·축구말출로 등 설치
 8. 주변 생태 및 녹지현왕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녹지를 단절하지 않고, 구역 내 외부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며, 절개지는 사면녹화를 반영하여야 합

- 목사가 언행되노족 하네, 용개시는 사건목화를 반당하려야 함

 9. 관료 매설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보행로 등 현 지형을 최
 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에 반당하고, 상하수도판,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등 환경객 약영향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10. 법정도로, 등로, 마음안길 등이 단결되지 않도록 등로압거 설치, 육교 및 부체도로 등 을 설치하고 주변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폭원 및 이를 적용하여야 함
- 11.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 11. 집중호우 시 봉수단면 부속으로 인한 수학·농경지(복용선물 등) 점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여야 합. 12. 하천횡단 교명 설치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되, 집속도로 중단 상황에 따른 만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합. 3. 구조물(교명) 설치시 우회도로 또는 가설교량 반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 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차로 개선, 보험로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
- ※ 특히, 4차로 전제 2차로 시용되어 현재 공용 중인 '용투-동면' 3.9km구간은 병목 현상이 우려되므로, 국도 간선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차로 확장 계획을 본 사업 계획에 포함 또는 신규 시항될 수 있도록 요청 15. 도계시·군)경계지역 표지판 설치 필요.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혐의 요망
- 16.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토

【미세먼지대책과】

- 1. 본 계획은 녹지공간 확보, 대기오염 정확수종(미세먼지 흡수량이 높은 수흥)식재 등으로
- 미세먼저 흡착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2. 대기절 예측결과(P493)와 같이 PMrs. PMrs 등의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관급 공사 노후장비 문영 제한(일정규모 이상), 비상자감조치 발함 시 공사기간 변경·조
- 정, 실수차 중대문업(주변도로 포함), 방진답개 목포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동 평가서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 4.)에 따라 충청남도 14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 시행 시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하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충남도청(14/14)

충북도청(1/4)

【환경안전관리과】

- 가, '건설패기울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도로법, 제2조제'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또는
- 표표 대표의 제소로제(전에)보여 바로 그로 인공료자(표시구(다) [집문보다 이상 보는 포장면적이 9,000째리마터 이상 등을 사례하는 경우 순환교째을이부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공사 시 비산먼지 등 오업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발생 녹색대목표 구발보이어 됨. 다. 사업시형 시 청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대목이 마련되어야함. 라. 레기플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화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플관리법, 과 '전설 다. 라기물로 간아서 가진 환경도급 중 환경에는이 발경하지 않고록 크기골라더라고 와 간을 폐기물의 제활용 측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정처리 및 제활용대례을 강구하여야 함. 마.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하가(신고) 등 인-하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물관리정책과】

- 가. 사업시행 시 로사뮤실로 인하여 주변 하천에 토시가 유입되지 않도록 무기 시 절성도 공사를 자제하여야 하며, 부유사 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및 장비로 인한
- 유류유출 등 토양·수질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계획노선 내 교령 설치 계획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 터널 공사 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하천 및 지하수 등에 영향이 무려되는바, 방
- 류페수로 인한 연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향을 최소하할 수 있는 대체을
- 라. 금강수계 수징오역총괄관리지역으로 저어서 등 담당부서와 혐의하여 지역개발 부 다. 마요구에 구글로그램등급단에서로 그로 인간에 중 마요구시와 함하되어 하시기에 구 하광을 함당받아 본만보고서에 최부하여야 함. 마. 도로 건설로 인한 지하수 시설 소멸 시 천인시 지하수 부서와 혐의하여야 함. 바. 터널 건설시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강수 침투를 고려
- 하여 친투수로 등의 공사가 필요한 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험점」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업 범위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보존조치에 대하여 혐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적하시기 마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혐의)에 따라 사업 법위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사업시험 전 관계기관과 보호방안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관계기관과 모르당인을 입의하시기 마랍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4,000㎡ 이상은 문화재청 협의 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 4,000㎡ 이하는 충남도청 협의 사항 다.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및 유물 확인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5조(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 계기관에 신고하기 바라.

PS 중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표사 홍과!







청 북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회신(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9219호(2020.10.22.)와 관련, 동민~진천(제1,2공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불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시형 환경정책과-14550 (2020, 11, 19.) 전수 도로계획과-10206 (2020, 11, 19.) 쿠 28515 · 충혈북도 철주시 살당구 살당후 82, (문화동)

원화번호 043-220-4022 혁스번호 043-220-4319 /kg68원kores.kr

교로벌 바이모 클러스터로 중북이 도약합니다.

/ 비공개

충북도청(2/4) 충북도청(3/4)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연 장: 12km(B=20.0m, 4차로)
- 설계속도: 70km/h
- 게시년도 · 2027년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요 사업내용
- 교량 8개소(352m), 터널 2개소(2,470m), 교차로 9개소 등

□ 검토의견

- O 본 사업은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구역의 결정전에 금강유역화경청과 혐의하여야 한
- O 계획노선 주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수탈, 삵, 황조롱이, 원앙 등)이 서식 및 서식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출현·활동시기 등을 고려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 O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환경부)」및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2017, 환정부) 를 참고하여 야생 동물 이동경로(통로)를 확보하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 O 본 사업구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미호A, B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진천군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진오염총량 할당량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O 사업구간 내 지하수 관정 철거, 지하수시설물 설치 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지하수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수와 혐의하여 함.
- O 사업추진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환경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O 공사·발과 시 시험발과를 통해 현장여건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 한 이격 거리별 사용가능 장약량을 산출 발파로 소음 진동 규제기 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 온시설(주거지, 축사 등)에 대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O 본 사업지역 내의 식생이 우수한 수목은 재이식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고되어고, 구인 이전기 구권조권 공식군 뒤에 침사지, 오탁 방지막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

충북도청(4/4) 천안시(1/1)

-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급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인(인·허가 등)권자는 인·허가 등을 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부과자료를 생태계보전협 력금의 부과권자(우리도 환경정책과)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의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약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혐의내용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
- 본 검토의견은 우리 도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 · 혐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끝.

새로운 천안, 정목한 시민 처

안

N



수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정(도로계획과정)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위견 제출(동면-진천)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도로계획까-9219(2020, 10, 22.)호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시행중인 "용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병가서(초만)"에 대한 검토의견율 이래와 같이 회사하으니 검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O 레토의건

- 계획노선에 2개 지방하한(녹동천, 용두천)과 소하천(동산천)이 저축되는 바, 지방하천에 대해서 는 관리청인 충청남도(하천과)와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건설도로과)와 도로구역 결정전 백도 현의하이아 함
- 덕성2리 마을 인접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및 개통 후 발생하는 소름,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갑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함.

아물러 공사 중 우려되는 덕성2리 마음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체망이 검토 요청



시혈 건설도로과-30506 (2020, 12, 16.) 접수 도로계리과-11366 (2020, 12, 16.) 우 31162 중청남도 한반시 서북구 변경로 156, 건설도로과 (불당동) / www.cheonan.go.kr 급화번호 041-521-5555 학교번호 041-521-2489 /kgy108@korea.kr '재인원보는 이용쪽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진천군(1/2) 변제: 이숙원 / 자박기반과 (2020-12-01 09:39:04) 사람 중심의 전환경 미래도시 경기조건!					진천군(2/2)		
				4 (2020-12-0) 09(39(04)			
				মূপ 🏫	식기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7.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페기물 양이 5후 이상일 경우에는 학공일 이전에 「건설		
CAL II OF THE	진	천	군	3-11-817 2-4-3-7	기. 당시도 간에서 함성하다 인물에기를 당해 5분 이성된 6주에서는 작성을 하였다. 배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8. 「베기물관리법」 제17조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함에 따라 사업장(도쿄 건설공사) 운영시 베기물을 끌균 100kg/일 이상 배출함 결무에는 사업개시일 또		
수신 지역개발과 장 (경유) 제목 전략원경영향평가(초안) 제출에 따른 협의 회신(동연~진천 도로건설공사)				르건설공사)	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한 및 동범 시행규칙 제17조제1함제3호에 따라 사업		
지역개발과~2703(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동면~진천(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조인)				부환경영향평가(조안)	정(도로건설공사) 운영 시 지정폐기据(폐합성고분자화합을 등을 월 평균 100kg 이 상 또는 함계 월 평균 200kg 이상)을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지 정폐기품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대한 철저한 방 지대력이 상구되어야 함. 		
영향평가 대상 도로의 건설사 청하여야 하면 전 수절도염총 1,2공구) 도로 당 될 경우에는 로 수필도염총 검토 가능하며 가할 수 있음) 2. 「자연환경보전 유역환경정의 입 함택금 무과관	개발시업 및 「환 검은 환경항화가 I . 협의 시 누절이 함 합당 가능여부를 건설공사는 급장수계 : 「오염총항기본방 방 합당은 급간수계 합의 시 쿠리 군 숙 법의하여만 하며, 또 대기를 한 남부터 I 자(순정북도지사)에	명명항량가법 대상 개발사(충향 누적건 - 환경과와 1 제4단제(2) 1 제28조 4단계 충흥 질도염흥량 생태·자연도 한 동법 제4 20일이내에 몸보하여이	1. 제22초에 따른 업으로 금강유역한 반리대장을 침부하여 이리 함의 하여야 021년 - 2030년) 제2항에 따른 기 최 형목도 오염총량교는 개발활당 가능량 부 등급 전역에 포함 162제2항에 따른 사업자 및 사업내 + 함.	사 계획)은 전략환경 4mm이상의 신설되는 관광장에 협의를 요 여야 함.(호 사업시행 하여, 동연-진천(제 준공에전 사업에 배 환모진 식관량 부족으 의 기본계획 속인 후 목으로 총망활당이 불 되는 지역여부를 급강 생태제모전철력급 부 (종 등을 생태제보전	불암 생태계모전합력금 안내문 1부. 끝.		
3. 「울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환경영환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 업계획을 확정한 남부터 60일 이내에 급강유역환경함에 신고를 하여야 합. 4. 도로건설공사 중 『물환경보전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터널뼈수가				승인용을 받거나 사 하여야 함.	भ व भ अ		
발생 할 경우에는 「불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패수배출시설 설치하기(신고) 를 하여야 함.					李字音 Aminimis and 2000 10 30		
 「불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 등을 버리는 형위 및 환경부평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 					월조자, 시청 환경자-46544 (2020, 10. 26.) 접수 지역가받자-24794 (2020, 10. 26.)		
	00㎡이상일 경우 공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 1조[별표9]에 따라 굴	후 27832 중청북도 진천은 전천은 삼산로 13. 전천관형 환경과 / http://www.incheon.go.k/ 전화번호 043-538-3472 력소번호 043-537-0475 / john/40@korea.k/ / 비공개(6,7)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기기대인 제인의 개인정보는 소송히 참그대인		
			문서관리카드	지역개념과 24794 1/2	로 개인으로는 설치하 시키GO 위인의 개인으로는 모양히 함으GO 문서관리카드 지역개발과 24794 2/2		

10. 주민의견 제출현황

• 공람기간 : 2020. 10. 26 ~ 2020. 11. 23 (21일간, 공휴일 제외)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구 분		공람장소	접수의견
공람 강소	계획수립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없 음
	관계기관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천안시 동남구 동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진천군 문 백면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rocm)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없 음